신탁법 개혁과 신탁회사법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신탁이 중요했던 이유

보통법(common law) 세계의 프라이빗 뱅킹은 개인만을 상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부유한 가문은 신탁, 재단, 지주회사를 통해 자산을 보유합니다. 이를 통해 승계를 계획하고, 자산을 보호하며, 가업의 경영을 여러 세대에 걸쳐 조직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가문의 부를 유치하려는 금융중심지에는 현대적인 신탁법과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수탁자 산업이 필요했습니다. 2003년 싱가포르에는 저지(Jersey), 건지(Guernsey), 케이맨 제도와 같은 경쟁자들이 제공하는 형태의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신탁법은 여전히 대체로 1967년 수탁자법(Trustees Act)과 영국에서 물려받은 보통법 규칙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신탁회사들은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개정되지 않은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있었습니다.[1]

정부는 18개월 안에 두 가지 결함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2004년 수탁자(개정)법(Trustees (Amendment) Act 2004)은 실체법을 현대화했고, 2005년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 2005)은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나중에 이 과정을 한 문장으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로 요약했습니다. MAS는 '2004년에 싱가포르 수탁자법을 개정하고 2006년에 신탁회사법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2] 2006년이라는 언급은 의회가 2005년에 통과시킨 이 법의 시행 시점을 가리킵니다.

2004년 수탁자(개정)법

2004년 수탁자(개정)법안(2004년 법안 제43호)은 2004년 10월 19일 제2독회를 거쳤습니다. 이 법(2004년 법률 제45호)은 2004년 12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3] MAS는 그 효과를 신탁법을 현대화하고 대체로 영국의 2000년 수탁자법(Trustee Act 2000)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4] 개혁은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신탁재산의 투자, 기능의 위임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그때까지 19세기의 가족 신탁에 맞춘 규칙으로 규율되고 있었습니다.

개혁은 또한 생존자의 생존기간에 21년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던 보통법상의 영구구속기간을 고정 기간으로 대체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하면서 부총리 겸 법무장관 S. 자야쿠마르(S. Jayakumar)는 기존 규칙이 변호사와 판사에게 복잡하고 신탁 설정자의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고정 기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5] 민사법(Civil Law Act)의 새 section 32는 영구구속기간을 최대 100년으로 정했고, section 34는 2004년 12월 1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에 대해 '관망(wait and see)'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부분에서는 더 신중했습니다. 토론에서 임명직 의원 팡아이리안(Fang Ai Lian)은 비자선 목적신탁과 위탁자의 유보권한을 자유화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사항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가 다른 법역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6] 싱가포르는 목적신탁과 매우 폭넓은 유보권한을 만들어 낸 역외 중심지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유류분과 유보권한

수탁자법 section 90의 두 조항은 싱가포르 신탁 마케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section 90(2)는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사람이 싱가포르법, 그 사람의 주소지법이나 국적법, 또는 이전의 준거법에 따라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다면, 상속이나 승계에 관한 어떠한 규칙도 신탁의 유효성이나 신탁으로 보유될 재산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7] 이 조항은 대륙법 국가, 중동, 그리고 상속법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유산의 일정 지분을 유보하는 아시아 일부 지역의 고객들이 설정한 신탁을 보호합니다.

section 90(5)는 위탁자가 일정한 권한, 특히 투자 권한과 자산관리 기능을 유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89] 따라서 싱가포르 신탁의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아시아 기업가들이 자주 요구한 특징이었습니다. 투자 권한으로의 한정은 의회에서 표명된 신중함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위탁자가 실효적 통제권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신탁이 가장(sham) 신탁으로 취급될 위험을 줄였습니다.

2005년 신탁회사법

두 번째 단계는 수탁자 자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MAS는 2005년 1월 25일 신탁회사법안에 관한 해설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신탁회사는 회계기업규제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의 규제를 받았고, 등록은 자발적이었으며, 신탁회사의 수는 프라이빗 뱅킹 및 자산관리와 함께 크게 늘어났습니다. 새 체계는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이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행위 및 역량 기준을 정할 예정이었습니다.[10]

2005년 2월 18일 제2독회에서 당시 MAS 부의장이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은 규제 권한이 ACRA에서 MAS로 이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일 규제기관이 신탁 서비스, 프라이빗 뱅킹, 자산관리를 함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모든 자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게 라이선스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빗 뱅크는 수탁자로 행위하거나, 신탁에 관해 자문하거나, 신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일정한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단일 민간 그룹을 위해 행위하는 프라이빗 신탁회사는 시행규칙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장관은 이 법이 '싱가포르를 선도적인 글로벌 신탁 설정지로 자리매김시킬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11]

2005년 신탁회사법은 2006년 2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12][13] 프라이빗 신탁회사에 대한 면제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유한 가문은 더 가벼운 체계 아래에서 가족 신탁의 수탁자 역할을 할 자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법은 전문 산업에 대한 규제와 가족 구조를 위한 유연성을 결합했습니다.

신탁 산업의 성장

개혁은 빠르게 성과를 냈습니다. 2005년 10월 MAS는 최소 16개의 수탁 사업자가 2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약 800억 싱가포르달러의 자산에 대해 수탁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2년 전의 두 배였습니다. MAS는 수탁 및 보관 서비스의 발전을 전략적 과제로 다루었습니다.[14] 같은 연설은 평판 리스크를 신탁 산업의 주된 리스크로 지목하고, 운영자의 적격성과 자금세탁방지 요건 준수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고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탁 구조와 법인 수단은 훗날 제E편 제VI장에서 살펴보는 여러 건전성 사건에 등장했습니다.

실무가들은 지금도 2004년 개혁의 한계를 두고 논쟁합니다. 2004년에는 넉넉해 보였던 100년의 영구구속기간은 여러 세대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가문에게 짧게 느껴집니다. 특히 여러 역외 중심지가 이 규칙을 아예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탁, 프라이빗 신탁회사, 지주 구조에 관한 세부 규칙은 제E편 제IV장에서 설명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MAS, “The Trust Companies Bill 2005”, 교육부 장관 겸 MAS 부의장 타르만 샨무가라트남의 제2독회 연설, 2005년 2월 18일: “no major changes have been made to the Trust Companies Act over the last two decades”; 신탁회사의 등록은 자발적이었음. ↩

2. MAS, 이사(Executive Director) 응남신(Ng Nam Sin)의 Daiwa Wealth Management 개소식 연설, 2007년 1월 19일: MAS는 “updated the Singapore Trustees Act in 2004 and introduced the Trust Companies Act in 2006”, 이어서 “a healthy pipeline of interest from trust service providers”; 2005년 말 운용자산 7,200억 싱가포르달러. ↩

3. Barry C. Crown, “Private Purpose Trusts and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2009] *Singapore Journal of Legal Studies* 646–660, 646면 주 1 및 653면 주 40–41: 2004년 수탁자(개정)법(2004년 법률 제45호)은 2004년 12월 15일 시행; 2004년 법안 제43호; 2004년 10월 19일 제2독회(Singapore Parliamentary Debates, 제78권, 852단). ↩

4. 위에 인용한 MAS, 2005년 10월 26일 STEP 연설: 수탁자법은 신탁법 현대화를 위해 2004년 12월부로 개정되었으며, 대체로 영국 Trustee Act 2000에 맞추어짐. ↩

5. Crown, [2009] SJLS 646, 653면, S. 자야쿠마르 인용, Singapore Parliamentary Debates, 2004년 10월 19일, 제78권, 852단: 이 규칙은 “is complicated for lawyers and judges, it can frustrate the intention of the person creating the trust”;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replacement of the common law perpetuity period with a fixed period”; 새 신탁에 대해 최대 100년의 고정 영구구속기간. Crown, [2009] SJLS 646, 646면 및 652–653면: 민사법 section 32 내지 34; 100년 또는 신탁증서가 정하는 그보다 짧은 기간의 영구구속기간; 생존자의 생존기간 또는 더 긴 기간에 대한 언급은 100년으로 간주; section 34에 따른 “wait and see”.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6. Crown, [2009] SJLS 646, 654면, 제2독회 토론에서 S. 자야쿠마르가 팡아이리안 의원에게 한 답변 인용: “many issues that arise, especially from non-charitable purpose trusts and settlors’ reserve powers, are matters which require careful study”. ↩

7. Sim Bock Eng, Josephine Choo, Aw Wen Ni 및 Vincent Ho(WongPartnership LLP), “Singapore”,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Private Wealth 2025* 수록: Trustees Act 1967, s 90(2), 해당 인물이 “under the law applicable in Singapore or the law of their domicile or nationality” “or the proper law of the transfer”에 따라 능력이 있었던 경우 “no rule relating to inheritance or succession affects the validity of a trust or the transfer of any property”. ↩

8. 위에 인용한 WongPartnership, *Private Wealth 2025*: Trustees Act 1967, s 90(5), 투자 또는 자산관리 권한을 유보했다는 “by reason only of the person creating the trust or making the settlement” 신탁이나 settlement가 무효가 되지 않음; 싱가포르 신탁의 영구구속기간 100년. ↩

9. s 90(5)의 유보권한이 투자 권한과 자산관리 기능으로 한정된다는 점, 그리고 처분 권한을 유보할 수 있는 상응하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Singapore Law Gazette*, 2005년 8월호의 논평(2004년 수탁자(개정)법에 관한 특집 기사) 참조. ↩

10. MAS, 보도자료 “Explanatory brief: Trust Companies Bill”, 2005년 1월 25일: 기존 법에 따라 ACRA가 신탁회사를 규제; 자발적 등록; 새 체계에 따른 라이선스 의무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요건; 각 라이선스 신탁회사에 최소 2명의 상주 관리자; 은행 및 머천트 뱅크, 변호사 및 회계사, 프라이빗 신탁회사,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해외 인사에 대한 제한적 면제. ↩

11. 위에 인용한 MAS, 2005년 신탁회사법안 제2독회 연설, 2005년 2월 18일: ACRA에서 MAS로의 규제 이전; “licensing will be mandatory for anyone engaging in trust business”; 프라이빗 뱅크에 대한 면제; 변호사, 회계사 및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which act as trustees for a single private group" 프라이빗 신탁회사의 취급; 이 법은 "will position Singapore as a leading global trust domicile". ↩

12. 위에 인용한 MAS, 응남신 연설, 2007년 1월 19일: MAS는 "introduced the Trust Companies Act in 2006". ↩

13. Singapore Statutes Online에 게재된 2005년 신탁회사법 개정판에 따르면 2006년 2월 1일 시행. ↩

14. 위에 인용한 MAS, 2005년 10월 26일 STEP 연설: 2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약 800억 싱가포르달러의 자산에 대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 16개 수탁 사업자, 2년 만에 두 배 증가; 수탁 및 보관 서비스 발전을 전략적 과제로 설정; 최대 프라이빗 뱅크들을 포함하여 싱가포르에 200개 이상의 펀드매니저. 위에 인용한 MAS, 2005년 10월 26일 STEP 연설: 평판 리스크를 신탁 산업의 주된 리스크로 지목; 적격성 및 "the industry's observance of anti-money laundering requirements"에 중점.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